

#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항: ①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양병 → 정무일)

②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
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

③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④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⑤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⑥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: 2020. 7. 9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6.26 기준</u>
	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 재		<u>2020.5.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6.26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이양병</u> <u>2019.10.31 기준</u>	<u>정무일</u> <u>2020.6.30 기준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오기 정정 및 미기재 클래스 추가 기재	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/I, W 클래스 추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이양병</u> 2019.10.31 기준	<u>정무일</u> 2020.6.30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이양병</u> 2019.10.31 기준	<u>정무일</u> 2020.6.30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운용전문인력 변경 -	-	<u>2017.7.27~2020.7.8</u> : <u>이양병</u> <u>2020.7.9~ 현재 : 정무일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 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 류 및 각 종류별 특징	오기 정정 및 미기재 클래스 추가 기재 -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 재/I, W 클래스 추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 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경사항 반영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 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 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 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 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3 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	표준편차 : 12.18% 투자위험등급 :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 -	<u>표준편차 : 20.08%</u> <u>투자위험등급 : 2 등급(높은 위험)</u> <u>2020.7.9. : 3 등급 → 2 등 급</u> <u>최근 결산일 기준 3 년 수익 률 변동성이 15%초과 ~25%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- 따른 갱신	-	<u>2020. 6. 26 기준</u>
14. 이익배분 및 과세 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 및</u>

<p>나. 과세 4)연금저축계좌 가입 자에 대한 과세</p>	<p>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 입액 포함)</p>	<p><u>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 내</u> <u>가. 연 1,800 만원(퇴직연 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 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 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중 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 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 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</p>
	<p>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 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 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 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 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 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 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</p>	<p>공제제도 <u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</u></p>

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 
※ 지방소득세 별도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6. 26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매매 현황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6. 26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6. 26 기준</u>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0. 31 기준</u>	<u>2020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변	<u>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</u>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	<u>업데이트</u>
5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	<u>업데이트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	우
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			



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약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약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 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<신 설>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

---

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
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

---

			<u>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</u> <u>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	<u>전자등록기관</u>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
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	<u>전자등록기관</u>
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		

**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**

종합소득금액 (총 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		세액공제율
	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  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